

의안번호	제 701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송미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4월 13일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송미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  
발 의 자 : 송미애, 연종석, 윤남진  
이상정, 이상식, 장선배  
이옥규

1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소상공인 종합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
- 현행 조례에서 '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'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,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혼선의 문제로 '사업장을 둔 소상공인'으로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(안 제3조)  
(당초)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→ (변경) 사업장을 두고
-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, 전문성 있는 도의 출자출연 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8조, 안 제9조)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1. 3. 31. ~ 2021. 4. 10. (10일)
-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붙임

##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주소와 사업장”을 “사업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”을 “실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소상공인지원센터)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제6조”를 “제6조 및 제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에 <u>주소와 사업장</u>을 두고 「소득 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 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----- ---<u>사업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지원</u>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li>4. <u>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</u></li> <li>5. ~ 7. (생략)</li> </ol>	<p>제6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<u>실시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29조에 따른 <u>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</u></li> <li>5. ~ 7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(<u>신설</u>)</p>	<p><u>제8조(소상공인지원센터) ①</u> 도지사는 <u>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 <u>②</u>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<u>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8조(사무의 위탁)</u> ① 도지사는 <u>제6조</u>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<u>제9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</p>	<p><u>제9조(사무의 위탁)</u> ① -----<u>제6조</u> 및 <u>제8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필요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0조(시행규칙)</u>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소상공인기본법

제29조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내 소상공인 일원화 창구 운영으로 성장률 제고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소상공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(인건비, 운영비) 발생
- 소상공인 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발생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8조 소상공인지원센터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비용은 지속발생, 추계는 2021년~2025년까지 5년으로 함
- 인 건 비 : 위탁기관 자체 직급별 임금 지급기준에 의함

### 나. 추계 결과

#### ○ 산출과정

- 센터 운영비 : 2,000,000원×6개월 = 12,000천원
- 사무공간조성 : 50,000,000원×1식 = 50,000천원
- 인 건 비 : 3,500,000원(팀장)×6개월×1명=21,000천원  
2,833,000원(팀원)×6개월×5명 =85,000천원
- 사 업 비 : 창업·경영아카데미 등 3개 사업 250,000천원

- 산출결과 : 연간 418백만원, 2021년부터 5년간 총2,362백만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
세 출	2,362	418	486	486	486	486
센터 운영비	108	12	24	24	24	24
인건비	954	106	212	212	212	212
사무공간조성	50	50	-	-	-	-
사업비	1,250	250	250	250	250	250